

SmartWhistle

윤리경영 Newsletter 2019년 1월호

1. 최근 동향 및 소식

- 권익위, 부패시책평가 결과 발표... '반부패 노력 상향평준화'
- 빈 살만 왕세자 주도 사우디 반부패조사 종료... "112조원 환수"
- 부패 청정지대' 싱가포르... 혹독한 법치로 국가경쟁력 키웠다
- 올해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간담회 9회 개최

2. 윤리경영 실천 사례

- 싱가포르 부패방지제도 Part 1

3. 청렴 위반 사례

- 법인카드 사적 사용
- 시의원의 특정직원 채용 청탁

4. 지식마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5. Quiz

6. 관련 행사 및 독자 의견



최근 동향 및 소식

1. 권익위, 부패시책평가 결과 발표 ... '반부패 노력 상향평준화'



부패방지를 위해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모색한 공공기관들이 부패시책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72개 기관들이 2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전국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각급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활동성과를 평가해 청렴성을 높이려는 차원이다. 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평가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반부패 우수사례 개발·확산 등 총 6개 영역, 39개 지표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평가를 통해 나타난 보완 필요사항을 각 기관에 전달해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후속조치를 점검 관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게 권익위의 구상이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131_000546765&cID=10301&pID=10300

2. 빈 살만 왕세자 주도 사우디 반부패조사 종료... "112조원 환수"

사우디아라비아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주도로 벌여온 부패 척결작업을 마무리했다.



30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지난 1년 3개월여간 이어진 반부패조사 활동을 끝냈다면서 그동안 왕족과 기업인 등 200여명을 조사하고 부동산과현금을 포함, 1천억달러(약 112조원) 이상을 환수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사우디 정부는 조사 대상 중 87명이 제기된 혐의를 인정하고 현금, 부동산, 기타 자산 등을 국고에 귀속하는 방법으로 정부와 합의해 풀려났으며, 이를 거부한 다른 8명은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반부패조사위원회를 통해 압둘라 전 국왕의 두 아들과 알왈리드 빈탈랄 킹덤홀딩스 회장 등 왕자 10여명을 포함, 전·현직 장관, 재계 인사 등 200여명 이상을 조사했다.

반부패조사를 주도한 빈 살만 왕세자는 이번 조사가 사우디에 만연한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개혁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국제사회에서는 그가 부패척결을 명분으로 왕권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만한 세력을 견제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131000606>

최근 동향 및 소식

3. ‘부패 청정지대’ 싱가포르...혹독한 법치로 국가경쟁력 키웠다



독일 소재 반부패운동단체인 TI가 29일 발표한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100점 만점에 85점을 받아 180개국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에선 지난해에 이어 1위 자리를 지켰다. CPI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대한 부패인식 정도를 점수화한 지표다. 1995년부터 매해 발표하고 있다. 0점에서 100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의미다. 공무원의 사익 목적 지위 남용을 막는 정도, 직권남용 공무원의 처벌 가능성, 정부의 부패 억제 기능 등을 조사한다.

싱가포르는 미국 비영리법인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가 지난해 발표한 ‘2017~2018년 법치지수’에서도 아시아 1위를 기록했다. 싱가포르 부패 행위조사국(CPIB) 데니스 탕 국장은 “지난 3년간 싱가포르 공공부문 부패 발생률은 낮은 편이었다”며 “부패 및 관련 범죄로 기소된 공공부문 직원은 연 평균 8명 정도 된다”고 밝혔다. CPIB는 공직자들의 부패 행위를 막는 총리실 직속 사정 기관. CPIB 소속 조사관은 부정부패 행위가 의심되는 공직자를 영장 없이 수색·체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싱가포르 공직사회가 세계적으로 투명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로 잘 마련된 법적·제도적 틀을 꼽는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131010019994>

4. 올해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간담회 9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이 행정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공공기관과의 정책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이러한 노력의 첫 단계로 1월 23일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중 감독기관 90여개,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기초자치단체(226개) 및 공공기관(338개)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청탁금지제도 운영 중점사항을 전파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없는 관행과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 또한, 그간 발생했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의 부적절 또는 미온적 처리 사례를 설명하여 올바른 신고 처리를 독려하고, 반기별로 실시하는 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다. 아울러, 지난해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에 따라 보완된 해석기준 등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배포하여 실제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게 지원하고,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일선업무수행 공직자와 법 안착 방안, 건의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609>

윤리경영 실천 사례

싱가포르 부패방지제도 Part 1

1. 개요

싱가포르는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 부패의 정도가 낮은 나라 중의 하나로 꼽힌다. 그 이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패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부패를 억제하려는 싱가포르 정치리저십의 강한 정치적 의지에 기인한다. 2004년도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조사에서 146개국 중 싱가포르는 5위를 차지하여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하였다.

1959년 리관유(Lee Kuan Yew)가 수상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일은 1937년에 만들어져 명맥만 유지해 오던 부패방지법(POCA, Prevention of Corruption Act)을 1960년에 개정하고 그 집행기관으로서 부패행위조사국(CPIB,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을 발족시켰다. 싱가포르에서 부패통제활동은 주로 CPIB에서 관장하여 부패방지법과 1989년에 제정된 부정축재 몰수법(CCBA, Corruption Confiscation of Benefits Act)을 통해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2. 부패방지 제도의 특징

부패의 개념

부패를 협의의 부패와 광의의 부패 둘로 나누어 보면 광의의 부패 개념은 공무원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권위를 오용 및 남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협의의 부패는 '공직자의 직무무위 위반행위'로서 일반인의 부패는 협의의 부패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부패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유형은 행정서비스나 계약이 법령에 따라 제공되면서 부패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 경우 공무원은 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처리하면서도 그 대가로 불법적 사익을 수수한다. 둘째 유형은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부패가 바래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금지된 행정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하여 뇌물이 지불된다.

지도자의 의지

리관유는 저서 『내가 걸어온 일류국가의 길』을 통해 본인의 인성관을 드러낸 바 있다.

공직자들에게 권력과 자유재량이 주어진다면 그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며, 인간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의 교묘함을 드러낸다(리관유 2001 : 244)

리관유는 부패에 제재를 가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의 효율성은 첫째, 부패에 대한 법률이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는가이며 둘째, 부패의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대중의 고발정신과 셋째, 부패를 척결하는 조직의 분별력 있는 대담한 조사에 달려있다고 했다(Alatas 1989 : 992). 한편 리관유는 부패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대중여론이 가장 강력한 부패억제 요인이며 다른 말로 한다면 부패에 대한 오명은 감옥살이를 하더라도 지워질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만의 하나 있을지로 모를 관료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상실 직속기관으로 부패행위조사국(CPIB)을 설치해 놓고 있다. 공무원들의 비리에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어떠한 예외 규정도, 불명예스럽게 면직된 공직자가 화려하게 변신, 제기할 기회 또한 없다.

리관유가 수상이 되어 처음 한 일 중 하나는 자기 부모 형제들을 초청하여, 그 때부터 그들이 자신에게서 어떤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지 말 것이며, 국가의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스스로 살아가라고 말한 점 또한 친인척 부패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그의 의지로 볼 수 있다.

리관유는 수상이 되고 나서 친지들도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공언하였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법 위에 두지 않음으로써 먼저 모범을 보였다.

윤리경영 실천 사례

3. 부패행위조사국(CPIB)의 운용

싱가포르의 부패척결의 임무를 맡은 최고 기관은 1952년 영국이 세운 부패행위조사국(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이다. CPIB는 수상(Prim Minister's Office)의 관할 하에 있으며 운영(Operations Division)과 행정 및 전문가 지원국(Admin & Specialist Support Division) 두 부서로 나누어져 있다.

1. 부패에 대한 예방적 교육활동 중시

또한 부패방지를 위한 CPIB의 예방차원활동의 일환으로 부패행위 소지여부 진단 및 부패의 해악에 관한 정기 강연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교육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공무원들은 처음 임명되었을 때부터 매년 자신, 배우자, 자신의 미성년 자녀들의 자산과 회사의 투자액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의 변동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만일 설명할 수 없는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 전액 몰수당한다.

싱가포르 경찰 부패방지 대책은 1999년 6월 11일 발표하였는바, 부패유혹이 큰 보직에 대해서는 순환 보직 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고,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하여 부패경찰관은 강력 처벌하며 뇌물을 거부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포상조치한다. 경찰관 채용시부터 정신상태와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심사하고, 음주 도박 여성편력이 있는 자는 채용대상에서 배제한다.

2. 부패에 대한 엄정한 제재

부패행위조사국은 1952년 말단 경찰과 경찰의 중간 간부, 그리고 노점상 단속반과 토지 관리인들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세워진 기관이었다.

1960년에 리관유는 1937년에 제정돼 시대에 뒤떨어진 반부패 법을 개정된 부패방지법의 제정으로 값나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뇌물의

정의를 확대했다. 이 법률의 개정으로 체포수색과 은행계좌의 조사, 피의자 그리고 그의 아내와 자녀, 혹은 대리인의 은행장부 조사까지 포함하는 막대한 권한이 수사기관에 부여되었다.

1989년에는 부패(이익의 몰수)법의 제정으로 법정의 판사에게 부패한 범죄자들의 부패행위를 통해 축적한 재산과 자산의 몰수 및 동결 권한을 부여했다. 1999년에는 부패 및 마약거래기타 중대한 범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돈세탁이라는 새로운 위법행위의 개념 도입을 통해, 재산 및 자산의 동결과 몰수를 집행할 기반을 마련했다(부패방지 위원회 2002).

부패행위조사국(CPIB)은 공직 부정행위 뿐 아니라 민간부분의 부정행위까지 조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범죄에 관련된 정보가 수집되거나 상당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은행계좌, 주식지분, 부동산구입, 지출상태를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관련 기록, 물품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혐의자의 재산과 서류를 압수,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부패방지위원회 2003).

리관유는 “젊은이 특히 대학생”들에게 그의 의지를 강요했다고 비난받는다(Josey 1980 : 63). 1969년도에 “싱가포르에 히피가 있을 장소는 없다”고 공언했고 1970년에는 만약 외국인들이 히피로 행세하다가 적발되면 그들이 히피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국에 납득시키지 못할 경우 체포되어 국외로 추방되었다. 리관유는 근면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의 질서가 국가적 발전에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했다(리관유 2001 : 64). 리관유는 공무원의 복장과 머리를 짧고 단정하게 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는 면직된다(리관유 2001 : 68). 국가형성과정에서 리관유는 끊임없이 국민에게 근면하라고 말했다(Josey 1980 : 208).

이상수, '싱가포르 부패방지제도 : 리관유의 부패방지전략'

청렴 위반 사례

1 법인카드 사적 사용

모 공직유관단체 A단장은 간부들과의 단합을 위한 워크숍 명목으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한 뒤 골프장 사용대금 10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 하였고, 워크숍 후 자정 무렵 고급 유흥주점에서 간부들과 유흥비로 5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함

시사점 :

- 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이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 사용이 금지된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근무 외 시간인 심야 시간에 유흥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임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2 시의원의 특정직원 채용 청탁

모 시청 A인사과장은 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의 사촌을 정규직에 채용해 줄 것을 부탁받았고, A인사과장은 시의원의 청탁대로 해 주면 예산 심의시 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고 기대하여 이를 시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의원의 사촌이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함

시사점 :

- ① A인사과장이 시의원으로부터 친인척 채용을 부탁받은 것은 부당한 청탁에 해당하므로 소속 기관의 장인 시장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지만 이를 생략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위반임.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식마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1.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한편,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2. 법안 주요 내용

‘청탁금지법’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 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또 법안 시행 초기에는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12월 선물 상한액은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오르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아지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해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화훼 포함)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한다. 여기에는 농수축산물 원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도 함께 해당한다. 경조사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한액이 낮아지는데 현금 5만 원과 함께 5만 원짜리 화환은 제공할 수 있다. 만약 현금 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인정된다. 다만 음식물은 유일하게 현행 상한액(3만 원)이 유지된다.

아울러 법안은 누구나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등 총 14가지로 구분했다. 다만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

지식마당

대상 구분	사례금 상한액
장관급 이상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공직유관단체 기관장	시간당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원	시간당 30만원
5급 이하/공직유관단체 직원	시간당 20만원
사립학교 교직원/학교법인 임직원/언론사 임직원	시간당 100만원

<대상 구분에 따른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3. 법안 적용 대상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5일 법안의 적용 대상 기관 4만 919곳을 공개했다. 공공 분야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선관위·인권위 등 6곳 ▷중앙행정기관 42곳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260곳 등이다. 공직유관단체 982곳과 공공기관 321곳도 포함됐으며,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이다.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 2412곳으로 유치원 8930곳, 초·중·고등학교 1만 1799곳, 외국인학교 44곳, 일반대·전문대·대학원 398곳, 사립학교 1211곳, 기타 학교 30곳 등이다. 언론사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곳(1만 7210곳)이 모두 포함됐다.

5. 현재,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2016년 7월 28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 ①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 현재는 교육과 언론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역으로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②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 등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도 5대 4로 합헌 결정했다.
- ③ 음식물·경조사비 등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가액의 상한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한 부분도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탄력성이 있는 행정 입법에 위임해야 한다.’라며 합헌 결정했다.
- ④ 김영란법에 적시된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쟁점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유형
네이버 지식백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청탁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형벌
금품등 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자	과태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자	형벌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등	과태료

<청탁금지법 주요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기준>

Quiz

1. 다음 중 청탁금지법의 구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품 수수 금지
 - ② 부정청탁 금지
 - ③ 갑질 금지
 - ④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2. 다음 중 2017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안 의결을 통해 입법예고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기준으로 상한액 유지
 - ②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기준으로 상한액 유지
 - ③ 경조사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한액 하향
 - ④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 기준으로 상한액 유지

3. 다음 중 대상 구분에 따른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으로 옳은 것은?
 - ① 장관급 이상 시간당 60만원
 - ② 5급 이하/공직유관단체 직원 시간당 50만원
 - ③ 차관급/공직유관단체 기관장 시간당 40만원
 - ④ 사립학교 교직원/학교법인 임직원/언론사 임직원 시간당 10만원

4. 다음 중 청탁금지법 주요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기준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과태료
 - ②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형벌
 - ③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자 : 과태료
 - ④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등 : 과태료

과월호 Quiz 정답 및 해설

1. 답 ③ 갑질 금지
2. 답 ③ 경조사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한액 하향
3. 답 ③ 차관급/공직유관단체 기관장 시간당 40만원
4. 답 ③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자 : 과태료

관련 행사

1.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anking, Business Ethics and Entrepreneurship.(BBEE)



주최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rdisciplinary Research Methodology and Innovation (IRRMI)

일시 : 2019년 1월 16일 ~ 2019년 1월 17일

장소 : Kuala Lumpur, Malaysia

CALL FOR PAPER

The conference welcomes empirical research as well as theoretical/conceptual research papers having potential for field applications and in-depth literature reviews. Broadly defined, but not limited to, tracks of the conference are:

- Architecture, Gender Studies, Political Science, Banking
- Political Economy
- Banking
- Organizational Behaviour
- Rural-Urban Development
- Tourism Economic

<https://irrm.com/upcoming-conferences/malaysia-conference-bbee-january-2019/#>

2. Business Sustainability Conference 2019 and the Hong Kong Business Sustainability Index Recognition Ceremony



주최 : Friends of the Earth(HK)

일시 : 2019년 1월 7일

장소 : Shatin, Hong Kong

Forward-thinking leaders seek opportunities to grow their business by creating profit while protecting natural resources and improving social well-being. Business Sustainability Conference and workshop series, organised by Centre for Business Sustainability of CUHK and co-organised by SGS Hong Kong and Friends of the Earth (HK), brings together academics and business professionals, capture the latest ideas and innovations, develop precision strategies and build capacity to achieve Business Sustainability.

<https://ftp.foe.org.hk/en/activity/Project%20Activity/forum/business%20sustainability%20conference%202019%20and%20the%20hong%20kong%20business%20sustainability%20index%20recognition%20ceremony>

독자 의견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advisor@jcons.co.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